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건설국 소관)

I. 총 관

1. 예산규모

금회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중 건설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1,204억 1,259만원으로 이는 금년 제1회 추경대비 10.9% 해당하는 118억 3,703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건설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69억 2,250만원이 증액된 474억 3,67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도시과는 40억 9,335만원이 증액된 209억 3,40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건축과는 15억 4,523만원이 감액된 3억 9,527만원,
- 교통행정과는 18억 5,944만원이 증액된 80억 9,413만원,
- 하수도과는 5억 446만원이 증액된 423억 5,268만원,
- 지적과는 250만원이 증액된 11억 9,97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

(표 1)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1회 추경	증 감	증감율
계	120,412,594	108,575,560	11,837,034	10.9
건 설 과	47,436,766	40,514,258	6,922,508	17.1
도 시 과	20,934,038	16,840,686	4,093,352	24.3
건 축 과	395,272	1,940,502	△1,545,230	△79.6
교통행정과	8,094,132	6,234,688	1,859,444	29.8
하수도과	42,352,684	41,848,224	504,460	1.2
지 적 과	1,199,702	1,197,202	2,500	0.2

2. 주요사업별 내역

[건설 과]

○ 임진강유역 농업용수 개발사업(과목조정)-----	△ 5,500만원
○ 농어촌마을진입로 및농로포장사업 -----	3억 2,500만원
○ 2003한발대비 대형관정공사 -----	2억 4,000만원
○ 임진강유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	5억 3,000만원
○ 2003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상사업비) ---	1억 6,000만원
○ 2003농경지 호우피해복구(성립전) -----	139만원
○ 수리게 수리시설 유지관리 -----	4,000만원
○ 소하천 호우피해복구(7개소) -----	1억 8,300만원
○ 곡릉천 징검다리설치(한라아파트~봉일천) -----	1억원
○ 연풍2리 하천시설물(옹벽)안전진단 -----	△ 320만원
○ 미불용지보상 -----	△ 168만원
○ 파평배수펌프장 피해복구(호안블럭) -----	1,500만원
○ 골재채취지역 군부대시설물(CCTV설치등 3식)---	△6,000만원
○ 자유로 시설물 유지보수(과목조정) -----	△3,000만원
○ 자유로 풀깎기 대형에초기구입(과목조정) -----	3,000만원
○ 덕천~답곡간 도로정비공사(재정보전)(성립전) ---	4억원
○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공사(5.6Km) -----	14억원
○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공사(4.5Km) -----	8억 3,000만원
○ 운천~장산간 도로확포장공사(1.5Km) -----	3억원
○ 당동~여우고개간 연결로개설공사(1.0km) -----	16억원
○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개설공사(270m) -----	1억 5,000만원
○ 신산(광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330m) -----	2억 6,000만원
○ 선유~문산여고간 도로확포장공사(150m)(특별교부)-	5억원
○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무료점검 -----	800만원

[도 시 과]

○ 파주시도시계획 재수립용역 -----	2억 7,000만원
○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토지적성 평가분) -----	△1억 2,000만원
○ 파주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	33억 5,000만원
○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	3억원
○ 가월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	4,300만원
○ 호우피해 복구사업(6개소) -----	2억 8,500만원
○ 가월리 마을회관 증축공사(과목조정) -----	△ 4,300만원

[건 축 과]

○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전액감) -----	△15억 4,357만원
------------------------------	--------------

[교통행정과]

○ 시내버스재정지원 -----	△ 8,747만원
○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	16억 6,360만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	1,604만원
○ 경의선 전철사업 부담금 -----	8,100만원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1억 4,627만원

[하수도과]

○ 하수관거 정비사업 -----	3억 8,000만원
○ 하수도사용료 부과정수 S/W 개발(1식) -----	1,800만원
○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	2,500만원
○ 법원2리(온양동) 수해복구 공사(70m) -----	2,100만원
○ 지하수 계량기 설치공사 -----	5,680만원
○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토지매입(과목조정) -----	12억원
○ 문산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과목조정) -----	△12억원

[지 적 과]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과목조정)
 - 기초도면제작 용역 ----- △ 8,000만원
 - 주출입구,도로 기종점조사 및 DB구축용역 ----- △ 2,200만원
 - 새주소관리 및 안내시스템 ----- △ 2,800만원
- 도로명판 제작 설치(과목조정) ----- 1억 3,000만원

II. 검토의견

1.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10.9%인 118억 3,70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비 추가 내시에 따른 자체사업비 부담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장기간 미완료된 계속사업의 금년 마무리사업(3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법적의무경비, 부담금사업 등에 중점으로 배분되었음.

2. 과별 예산안 검토

[건설과]

- 농업기반조성사업 12억 4,139만원의 예산중 임진강유역농업용수개발사업 5,500만원을 감액하여 양수장을 관리하는 수리계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과목을 조정하였고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시비 미부담금을 금회 시비를 계상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대형관정개발 사업 또한 신규개발도 필요하지만 관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이 철저한 관리로 지하수오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호우피해복구 사업에 해당하는 하천관리사업은 2억 7,811만원으로 소하천 호우피해복구 7개소에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조기에 하천을 복구하여 호우피해 재발을 예방하고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릉천 징검다리 설치공사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수공간을 확보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폭우시 공릉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피해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건설행정 자체사업인 사목지구 골재채취사업 중단으로 군부대 시설물 설치비 6,000만원을 일부감액 계상 하였고

○ 도로유지사업에 재정보전금 성립전 예산으로 덕천~답곡간 도로정비공사는 장갑차전복사고가 발생한 도로로서 미포장된 곳과 기존 노폭의 협소로 인한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도로건설사업중

- 검산 ~ 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 5.6km
- 봉암 ~ 파주리간 도로확포장공사 4.5km
- 운천 ~ 장산간 도로확포장공사 1.5km
- 당동 ~ 여우고개간 연결도로개설공사 1.0km
- 세무서 ~ 금촌시장간 도로개설공사 270m
- 신산(광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30m
- 선유~문산여고간 도로확포장공사 150m 등

총 50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공사,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개설공사, 신산(광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개사업은 금년도 연말에 마무리가 기대되며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장기간 예산지연으로 마무리가 미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사업비의 확보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재난관리사업으로 2003년도 『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따른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점검시 위험요소발견시 정비대책 까지도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됨

[계속사업비조서]

-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 125억 7,500만원에서 82억 2,500만원이 증액된 총 208억원이고 봉암~파주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 68억원에서 19억원이 증액된 총 87억원의 사업비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사업량 변경없이 당초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은 무슨사유인지 설명이 요구됨.

[도 시 과]

- 도시계획관리 사업으로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2억 7,000만원을 추가증액 계상하여 선 계획, 후개발 체계 확립과 시범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기대되며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사업이며, 파주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비 금회 33억 5,000만원을 증액 총 4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수자원, 환경, 교통, 통신, 건설, 도시계획 등 각 분야에 활용이 기대됨
-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3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소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적절한 배분으로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세출 예산의 신규 산업단지조성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용역비 9억 5,000만원을 전액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항별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건축과]

- 건축과 소관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비(새마을지역) 15억 4,300만원을 2002년 12월 주민들의 사업포기로 국·도비를 전액반납 하는 것으로 감액 계상 하였음.

[주택사업특별회계]

- 세입은 제1회 추경대비 2억 3,922만원이 증액된 19억 8,612만원으로 국민주택이자수입이 일시상환으로 1,527만원이 감액되고 민간융자금 수입(패키지마을원금, 국민주택원금) 2억 5,44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세출은 국민주택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채상환이자 1,527만원 감액과 민간융자금원금 수입 발생으로 인한 지방채 차입금원금 상환 2억 5,449만원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교통행정과]

- 민간이전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버스업계 손실보전으로 경영개선과 서비스향상을 위해 시군의 인구수 비례하여 시군비 부담금으로(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8,747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16억 6,360만원의 증액 계상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경유·LPG차량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고 금회 주행세 안분내역 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예산으로 사료됨.

-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과 경의선 전철사업 부담금 등은 시군별 부담액 변경에 의한 불가피한 것으로 증액 계상 하였으며,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를 금회 1억 4,627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국도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세출예산중 공영주차장 건립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고 법원공영주차장 건물보상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171만원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하수도과]

- 파주시 일원의 하수 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양여금)으로 적성면 마지, 구읍리(9km)일원에 기투자 29억 4,400만원, 금회 3억 8,000만원, 향후 44억 3,300만원 등 총 77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오·우수관을 분리 시공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의 보호 및 설마천 수질보전,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위한 사업으로 금회 시비 미부담액 3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S/W개발비 1,800만원은 2004년부터 하수도요금 부과징수계획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요금 프로그램이 필요하여 계상한 것이며, 지하수 계량기 설치공사 5,68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하수 사용가구 710개소에 대한 2004년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지하수사용량 계측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 하였으며
- 문산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전액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편입토지매입 보상은 시에서 추

진하기로 협약 체결되어 금회 민간대행사업비 12억원(일부감)을 감액,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각각 계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적과]

- 지적과 소관 예산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새주소 사업) 집행잔액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명판 제작·설치비로 과목을 조정 계상하여 마무리가 기되대며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사업임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 준 구	답변부서	건설국 도시과
질문제목	교하 운정1지구내 도시계획세 부과내역		

☐ 질문요지

- 교하 운정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도시계획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주민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
- 주민들이 계속해서 땅을 가지고 있다면 도시계획세를 납부해도 억울하지 않는데, 쫓겨나는 마당에 땅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돈을 내야 되는바,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는 바,
- 금회 운정1지구내에 부과한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되며 이의제기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 답변내용

- 교하 운정지구내 도시계획세 부과와 관련하여 소관과(시세과) 의견을 불입과 같이 제출합니다.
- ※ 불입 관련자료 사본 1부.

작성자 도시과장 김 영 구



교하 택지개발 지구내 도시계획세 과세

1.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235조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형도면을 결정고시한 후 부과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1호) :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
- 지방세법 제 238조 :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바에 의하며,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파주시 시세 조례 제85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2003 교하 도시계획세 부과까지의 연혁

- 2002. 6. 17 : 건교부 장관의 교하 도시계획구역 결정고시
(도시계획법 제 24조, 제 30조)
- 2002. 9. 27, 2002. 10. 12 : 경기도 고시, 파주시 고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도시계획법 제30조)
- 2003. 5. 22 : 교하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 27조)
- 2003. 5. 22 : 교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심의 의결
(지방자치법 제35조)
- 2003. 5. 27 : 교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지방세법 제238조, 파주시 시세조례 제85조)

3. 교하 택지개발 예정지구

- 운정1지구 : 도시계획구역으로 지형도면 기 고시, 택지개발 지구 기 지정
(도시계획세 부과)
- 운정2지구 : 일부도시계획구역으로 지형도면 기 고시, 택지개발지구 미지정
(일부 도시계획세 부과)
- 교하지구 : 도시계획구역이지만 지형도면 미 고시, 택지개발지구 기 지정
(도시계획세 미 부과)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교부 장관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한 지구와 하위법인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지정한 지구는 별도의 지구 지정이며, 택지개발지구 지정 유무와 관계없이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교부 장관이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함.

4. 이의제기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교하운정1지구에 부과된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임.

교하읍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세 부과현황

(단위 : 천㎡, 천원)

구 분	건수	면적	세액
도시계획세 추가편입 면적 및 합계세액		8,015	222,899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도시계획세(수용예정지구)	1,083	693	107,142
택지개발예정지구외 도시계획세(미수용지구)	474	339	47,120
교하읍 아파트의 도시계획세	8,074	457	68,637
도시계획지역 도시계획세 비과세감면	-	6,526	-

교하읍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감면현황

(단위 : 천㎡, 천원)

구 분	감면건수	감면면적	감면액
감 면 액 계	1,494	1,076	38,721
도시계획결정으로인한 종합토지세 감면액	747	538	32,268
도시계획결정으로인한 지방교육세 감면액	747	538	6,453

를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99. 5. 15 삭제)

3. (99. 5. 15 삭제)

⑧법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 (공함 및 이의신청) ①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 (과세대상 비치) 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84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이하 이 조에서 "시"라 한다)에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6조 (비과세 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서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면허와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7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①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의안관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정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①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자원조달방안 및 정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

④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한) ①주민(이해관계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제13조의 규정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

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경 기 도

우) 480-848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0	전화 (031)850-2942	팩스 (031)850-2969
도시주택과	과장 김창규	담당 이광복	담당자 안재명

문서번호 행정(2)도시58412-27222
 시행일자 2002.06.26 (1년)
 공개여부 공개

수신 파주시장
 참조

선 람	과장	우 성 령	지 시		
집 수	일자	2002.06.26	결 재 공 람	담당	정 원 호
	시간	1002			
	번호	2545			
	처리과	도시과			
	담당자	안 재 명			
	심사자		심사일		

제목 파주 교하 도시계획구역 결정 통보

1. 관련문서 : 건설교통부 58400- 590(2002.6.17)호
 파주 도시 58400-2448 (2001.9. 4)호와 관련임

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파주 교하도시계획 결정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결정도서를 귀시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 조속한 시일내에 같은법 2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하는 등 도시계획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관련 중앙부처 협의의견에 대한 귀시의 조치계획을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참 : 1. 도시계획구역 결정도서 1부(별도송부)
 2. 고시문 사본 1부(별도송부)
 3. 도시계획관련 부처 협의의견 1부(별도송부) 끝

경 기 도

전경 도시주택과



고 시 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45호

파주 교하도시계획구역을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동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시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2. 6. 17.

건설교통부장관

다 음

1. 파주 교하도시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시계획 구역명	행정구역명	면적(k㎡)	비 고
신 설	교하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다율리, 동패리, 목동리, 당하리, 와동리	8.015	최초결정

2. 파주 교하도시계획구역 결정도면 : 생략. 끝.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 녹지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종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종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종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고 시 문(안)

경기도 고시 제2002 - 4/03 호

1. 교하 도시계획(재정비)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같은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도로)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을 아래와 같이 준용 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3. 결정 및 도시계획법 준용인가 관계도서를 파주시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결정조서 : 따로 붙임

나. 결정(준용인가)도면 : 따로 붙임(관보게제는 생략)

다. 도시계획법 준용인가사항

(1) 준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위치 및 종류

시설명	규 모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도 로	대 로	2	2	25~30	일반도로	주간선 도 로	4,542	서측도시계획구역 계 목동리 237-6답 일원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동측경계

(2) 준용하고자 하는 조항

○ 도시계획법 제18조 내지 제29조, 제31조 제2항, 제36조 내지 제41조,
제58조 내지 제76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내지 제96조

(3) 준용하고자 하는 이유

○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도로)관리

○ 도시내 간선도로 체계상 변경되는 도시계획구역밖 도로를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와 연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준용 결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 및 관리 도모

2002. 9. 27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시계획구역명	행정구역명	면 적(km)	비 고
기정	교 하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다율리 동패리, 목동리 당하리, 와동리	8.01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25호(2002.6.17)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m')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8,015,000	8,015,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	380,000	380,000	4.7	
	일반주거지역	-	380,000	380,000	4.7	
	제3종일반주거지역	-	380,000	380,000	4.7	
	준주거지역	-	-	-	-	
녹지 지역	소 계	-	4,610,000	4,610,000	57.5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	4,610,000	4,610,000	57.5	
미 지 정		-	3,025,000	3,025,000	37.8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①	교 하	파주시 교하면	-	8,015,000	8,015,000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준용 구간)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2	1	30	주간선	1,714	대로2-2 목동리 35-5전 일원	북측도시계획구역계 다율리 863답 일원	일반 도로	목동리 다율리	
"	"	2	2	25~ 30	"	7,174 (4,542)	동측도시계획구역계 야당리 728답 일원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동측경계	"	야당리 목동리	준용 구간 4,542m 포함
"	"	3	1	25	"	1,484	대로2-2 목동리 31전 일원	북측도시계획구역계 다율리 744답 일원	"	목동리	
"	"	3	2	25	"	1,900	대로2-2 목동리 550답 일원	동측도시계획구역계 야당리 789-1답 일원	"	목동리 야당리	

나. 학 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비고
신설	①	청암초등학교	초등학교	교하읍 다율리 4-1번지의 9필지	11,500	
"	②	-	초등학교	교하읍 야당리 501-64번지 일원	12,072	
"	③	지산중학교	중학교	교하읍 와동리 593번지 일원	14,282	

다. 공공직업훈련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비고
신설	①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	교하면 동패리 산124-1번지 일원	84,125	자연녹지지역

☐ 결정도면 : 따로붙임 (관보게재는 생략)

고 시 문 (안)

파주시 고시 제2002 - 73 호

우리시 교하읍지역의 개발압력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도로, 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고시합니다.

결정 및 관계도서를 파주시청 도시과 도시계획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2. 10. 12

파 주 시



□ 교하 도시계획 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규	중로	1	1	20	보조 간선	1,574	대로2-2 목동리 237-5장 일원	북측도시계획구역계 다율리 산52-6임 일원	일반 도로	목동리	
"	"	1	2	20	"	2,733	대로2-2 목동리 247-1장 일원	동측도시계획구역계 야당리 468-6도 일원	"	동매리	

나.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m')	비고
신설	①	당하공원	근린공원	당하리 산5-80임 일원	189,641	자연녹지 지역
"	②	목동1공원	근린공원	목동리 12-6장 일원	235,161	"
"	③	목동2공원	근린공원	목동리 산43-1임 일원	109,145	"
"	④	목동3공원	근린공원	목동리 39-5답 일원	55,120	"
"	⑤	목동4공원	근린공원	목동리 48잡 일원	230,083	"
"	⑥	야당공원	근린공원	야당리 332-4답 일원	142,192	"
"	⑦	동패1공원	근린공원	동패리 산147-24임 일원	30,685	"
"	⑧	동패2공원	근린공원	동패리 산159-1임 일원	55,014	"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정한 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 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한 때에는 도시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일인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3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

파 주 시

취급 정보통신망

우413-719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 (031)940 -4702	/FAX (031)940 -4709	
도시과	과장 김영구	담당	시상호	담당자 신정하

http://www.pajuro.net

문서번호 도시58400-1649

시행일자 2003.05.22 영구

공개여부 공개

받 음 수신처장조

참 조

선람	과장	지시	전 직원 회람 요	
접수	일자	2003.05.22	결재	사 미 영
	시간	14:43		
	번호	3533		
처리과	시세과	공람	담당자	서승래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교하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홍보

1. 우리시 교하읍 지역의 개발압력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 도모하고자 경기도 고시 제2002-5103호('02.09.27) 및 파주시 고시 제2002-73호('02.10.12)호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하였기에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읍·면에서는 본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파주시장



수신처 노10, 노11, 노12, 노13, 노14, 노4, 노6, 노7, 노29, 노15, 노17, 노18, 노19, 노20, 로1, 로2, 로3, 로4, 로5, 로6, 로7, 로8, 로9, 로10, 도5

고 시 문

파주시 고시 제2003 - 46 호

1. 우리시 교하읍 지역의 개발압력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시 제2002-5103호('02. 9. 27) 및 파주시 고시 제2002-73호('02. 10. 12)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기반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과(도시계획)에서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지형도면의 승인조서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장	변 경	변경후		
합 계		-	8,015,000	8,015,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	380,000	380,000	4.7	
	일반주거지역	-	380,000	380,000	4.7	
	제3종일반주거지역	-	380,000	380,000	4.7	
	준주거지역	-	-	-	-	
녹지 지역	소 계	-	4,610,000	4,610,000	57.5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	4,610,000	4,610,000	57.5	
미 지 정		-	3,025,000	3,025,000	37.8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①	교 하	파주시 교하면	-	8,015,000	8,015,000	

○.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준용 구간)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경 과 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2	1	30	주간선	1,714	대로2-2 목동리 35-5전 일원	북측도시계획구역계 다율리 863답 일원	일반 도로	목동리 다율리	
"	"	2	2	25~ 30	"	2,632	동측도시계획구역계 야당리 728답 일원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동측경계	"	야당리 목동리	준용 구간 4,542m 미포함
"	"	3	1	25	"	1,484	대로2-2 목동리 31전 일원	북측도시계획구역계 다율리 744답 일원	"	목동리	
"	"	3	2	25	"	1,900	대로2-2 목동리 550답 일원	동측도시계획구역계 야당리 789-1답 일원	"	목동리 야당리	
"	중로	1	1	20	보조 간선	1,574	대로2-2 목동리 237-5장 일원	북측도시계획구역계 다율리 산52-6임 일원	일반 도로	목동리	
"	"	1	2	20	"	2,733	대로2-2 목동리 247-1장 일원	동측도시계획구역계 야당리 468-6도 일원	"	동폐리	

○. 공 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m')	비고
신설	①	당하공원	근린공원	당하리 산5-80임 일원	189,641	자연녹지 지역
"	②	목동1공원	근린공원	목동리 12-6장 일원	235,161	"
"	③	목동2공원	근린공원	목동리 산43-1임 일원	109,145	"
"	④	목동3공원	근린공원	목동리 39-5답 일원	55,120	"
"	⑤	목동4공원	근린공원	목동리 48잡 일원	230,083	"
"	⑥	야당공원	근린공원	야당리 332-4답 일원	142,192	"
"	⑦	동폐1공원	근린공원	동폐리 산147-24임 일원	30,685	"
"	⑧	동폐2공원	근린공원	동폐리 산159-1임 일원	55,014	"

○. 학 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비고
신설	①	청암초등학교	초등학교	교하읍 다율리 4-1번지와 9필지	11,500	
"	②	-	초등학교	교하읍 야당리 501-64번지 일원	12,072	
"	③	지산중학교	중학교	교하읍 와동리 593번지 일원	14,282	

○. 공공직업훈련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비고
신설	①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	교하면 동패리 산124-1번지 일원	84,125	자연녹지지역

나. 파주 교하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1/1,200) : 개제생략

2003. 5. 22 .

파 주 시 장

②地方議會議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去來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施設 또는 財産의 讓受人 또는 管理人이 될 수 없다.

第34條 (議員의 義務) ①地方議會議員은 公共의 이익을 우선하여 政心에 따라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地方議會議員은 清廉의 義務를 지며, 議員으로서의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地方議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4條의2 (議員逮捕 및 確定判決의 통지) ①逮捕 또는 拘禁된 地方議會議員이 있을 때에는 관계搜查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議長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②地方議會議員이 刑事事件으로 公訴가 제기되어 그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各급 法院長은 지체없이 당해 議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9·8·31>

[本條新設 91·12·31]

第3節 權 限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改正 94·3·15, 99·8·31>

1. ~~議例와 制定 및 改廢~~
2. 豫算의 審議·확정
3. 決算의 승인
4. ~~法令에 規定된 것 및 法令 외의 使用料·手数料·分擔金·地方稅 또는 課税金에 關한 徵收~~
5. 基金의 設置·運用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7.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共施設의 設置·처분
8. 法令과 條例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豫算의 義務負擔이나 權利의 포기
9. 請願의 受理와 처리
10. 外國 地方自治團體와의 交流協力에 관한 사항
11. 기타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주 112)

(76)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

파 주 시 의 회

☎ 413-719 파주시 아동동 산 26번지 / 전화 (031) 940-8323 / FAX 940-8319
의회사무국 국장 이순용 의사담당 조양희 담당자 손용철 icanad@pajuro.net

문서번호 의회 13130-85

시행일자 2003.05.23.(년)(공개)

(경 유)

받 음 파주시장

참 조 기획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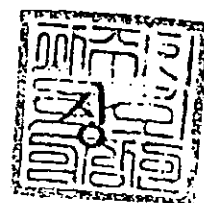
제 목 안전이송

신 람			지 시	
접	일자 시간	2003. 5. 23	결 제	
수	번호	2001	공 랑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3.05.22)에서 심의·의결된 안전을 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이송합니다.

- 붙임 1. 의안처리결과 목록 1부.
2. 수정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파 주 시 의 회 의



의안처리 결과목록

의안번호	안 건 명	처리결과	의 결 일자
3-114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2003.05.22
3-115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2003.05.22
3-116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 청취의견	의견서채택	2003.05.22
3-117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원안가결	2003.05.22
3-118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03.05.22
3-119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원안가결	2003.05.22

2. 建築物

都市計画法의 課税基準日 현재 第182條의 규정에 의하여 財産税의 納税義務가 있는 자

第236條【課税標準】 都市計画法의 課税標準은 都市計画法의 課税基準日 현재 土地의 價額(第234條의 15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價額을 말한다) 또는 建築物의 價額(第111條 第2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時價標準額을 말한다)으로 한다. (95. 12. 6 改正)

第237條【稅率】 ① 都市計画法의 標準稅率은 第236條의 規定에 의한 價額의 1,000분의 2로 한다. (91. 12. 14 改正)

② 市長·郡守는 條例가 定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都市計画法의 稅率을 第1項의 標準稅率과 다르게 定할 수 있다. 이 경우의 稅率은 그 價額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91. 12. 14 改正)

제238條【課税徵收】 ① 都市計画法의 課税徵收에 관하여는 特別市와 廣域市 또는 當해 市·郡의 條例의 定하는 바에 의한다.

(81. 12. 31 改正)(95. 12. 6 改正)
② 都市計画法을 賦課할 지역은 條例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特別市·廣域市 또는 市·郡의 회의 의결을 얻어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가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89. 6. 16 新設)(95. 12. 6 改正)

第196條 ~ 第198條 削除 (76. 12. 31)

第199條【納税告知】 都市計画法 第199條 또는 綜合土地稅의 納기가 같을 때에는 財産稅 또는 綜合土地稅의 納稅告知書에 이를 병기하여 納稅告知를 할 수 있다. (90. 12. 31 改正)

【사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립고시원 공공시설용지에 지상권 취득 등 이용시설이 존재하여도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95. 7. 15. 1996. 5. 28)

第105條의 2 削除

(91. 12. 31)

【사례】 도시계획세와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고시가 이루어진 후 지방세법의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부과 및 고시한 후 과세함이 타당함(세정 13430 503. 2000. 4. 2).

파 주 시

취급 정보통신망

우413-719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 (031)940 -4251	/FAX (031)940-4239
시세과	과장 석 명 범	담당 윤 재 권	담당자 서용해

http://www.pajur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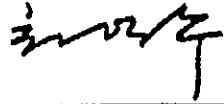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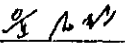
문서번호 시세 13430-1882

시행일자 2003.05 영구

(경유)

받 음 내부결재

참 조

보존기간	영구	시 장	
공개여부	공개		
부시장			
국장	전결		
과장			
★기안자	서 용 해	담당	 협조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파주시 도시계획세부과지역 변경고시 건의

1. 운정택지개발예정지구등 파주시 도시계획이 변경 추가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 238조제2항 및 시세조례 제8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안건 상정하였던 "파주시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고시(안)"이

2.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2003년 5월 22일 원안가결통보(기획 13130-895호:2003. 5. 26) 받았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붙임 1.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문 1부.
2. 안건이송통보 1부.(별첨)

제 2 안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제 목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 홍보의회

1. 운정택지개발예정지구등 파주시 도시계획이 변경 추가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 238조제2항 및 시세조례 제8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안건 상정하였던 "파주시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고시(안)"이

2.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2003년 5월 22일 원안가결통보(기획 13130-895호:2003. 5. 26) 받아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시보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문 1부 .끝.(추후별도송부)

파 주 시 장

수신처 노1,로1,로2,로3,로4,로5,로6,로7,로8,로9,로10,로11,로12,도5

읍·면·동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현황

(단위 : km²)

도시계획구역		기정	변경	비 고
구역명	읍면동별	면적	면적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계	53.674	61.689	
	문 산 읍	12.652	12.652	47.366km ² 중 (구)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파 주 읍	8.022	8.022	32.218km ² 중 (구)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법 원 읍	6.515	6.515	71.095km ² 중 (구)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교 하 읍	-	8.015	57.860km ² 중 (구)도시계획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번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월 룡 면	-	-	-
	탄 현 면	4.262	4.262	60.172km ² 중 (구)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광 탄 면	5.707	5.707	65.443km ² 중 (구)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파 평 면	-	-	-
	적 성 면	4.570	4.570	88.969km ² 중 (구)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군내, 장단, 진동, 진서면	-	-	-
	금촌1,2동 (조리읍 포함)	11.946	11.946	51.321km ² 중 (구)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추가) 지역

○ 교하읍 야당리 일원 8.015km²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2-125호, 2002. 6. 17)